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1,376,353	10,841,291
일반회계	316,889,874	9,506,696
특별회계	44,486,479	1,334,594
기타특별회계	44,486,479	1,334,594
상수도특별회계	5,052,545	151,576
항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121,930	3,658
수질개선특별회계	142,922	4,288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2,367,430	971,023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68,091	29,043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320,028	69,601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78,505	2,355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224,000	6,720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36,799	7,10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797,263	83,918
문화마을조성지구관리특별회계	70,000	2,100
기반시설특별회계	38,791	1,164
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68,175	2,04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63,04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6,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